

개정법령

- 도시계획법
- 도시공원법
-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개정령(개정 4. 17)

제 2 조제 1 항 제 1 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초지조성과 사료작물재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우마사: 초지조성면적과 사료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잠실: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사목중 “그 토지면적의 1,000분의 5 이하(기존창고의 면적을 포함한다)”를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하고, 동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하로 한다.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아목중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000분의 5 이하로서 33제곱미터 이하(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다)를”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동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도에 있는 감귤농원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 2 조제 1 항 제 1 호의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 담배건조실: 기존 일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일담배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

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주택의 증축: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지하층은 나목의 부속 건축물로 이를 건축할 수 있다.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 라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학교(교육법 제8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종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신학교에 한 한다.

이하같다) 시설의 증축(개발제한구역안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그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과 국민학교의 분교장의 설치(법 또는 고속도로 등의 설치나 학구개편으로 통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사.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1) 공익사업, 부락공동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 대지 또는 인근부

락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2) 빙발하는 수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 외딴집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인근대지 또는 인근부락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3)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인근에 있는 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축되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취락으로서 당해 개발제한구역안 또는 다른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전되는 경우의 당해 취락. 다만, 이전대상인 취락이 대지로서 부적당한 곳에 위치하거나 입지여건상 그의 이전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 아목중 “공원시설중”을 삭제한다.

제 2 조제 1 항 제 3 호의 커목중 “종축장” 다음에 “집종장”을 추가한다.

제 2 조제 1 항 제 3 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법 제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대중음식점 및 유드호스텔은 제외한다)

제 2 조제 1 항 제 4 호의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하치장·창고·농기계수리소·농기계용 유류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

제 2 조제 1 항제 5 호의 제목 “광공업등”을 “광공업 시설등”으로 한다.

제 2 조제 1 항제 6 호 나목중 「“다”목 및 “라”목」을 “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 2 조제 1 항제 6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다음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공장을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업종은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 기타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업종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일용품소매점·간이음식점·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공중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조산소·동물병원·간이수리점·취사용가스판매점·장의사 및 방아간에 한한다). 사회복

지시설(탁아소·양로원등을 말한다) 또는 종교시설이나 유치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제 2 조제 1 항제 6 호에 아목·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공중목욕탕
- 자. 효열비·사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차. 나환자촌에 설치하는 진료소와 나환자가 전계분을 이용하여 직접 경영하는 생산시설

제 2 조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행령 제20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개축 및 대수선
2.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우마사·퇴비사·잠실·싸이로·창고·관리용건축물·담배건조실·버섯재배사 또는 양어장 부대시설의 개축 및 대수선

제 3 조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목의 벌채 및 재식. 다만, 산림안에서의 축목의 재식과 조림을 위한 벌채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제 6 호의 표준 “사문암”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간 6 천톤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채굴할 수 있는 광산

제 3 조제 8 호의 가목중 “99,000제곱미터이상”을 “9만 9

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제 3 조제 10호중 “타목”을 “타목”으로, 동조 제 11호 중 “사”목을 “사”목으로 한다.

제 3 조제 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제 2 조제 1 항제 3 호 라목의 학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 3 조제 14호중 “러”목 내지 “퍼”목을 “러목 내지 허목”으로 한다.

제 4 조 본문중 “및 건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대한 비율” 및 토지분할의 기준”으로 하고, 동조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토지의 분할은 기존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과 기존주택의 분할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최소내지면적 이하로의 분할이 아닐것. 다만, 도로의 설치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박공형다락방의 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박공형다락방에 관하여는 제 2 조제 1 항제 2 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개정 82. 4. 17)

제 2 조제 2 호중 “야영장” 다음에, “노인정, 노인회관”을 추가하고, 동조제 5 호중 “교육용 야외극장, 과학전시관,”을 “야외극장, 전시관, 문화회관, 청소년회관,”으로 한다.

제 4 조제 1 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기성시가지안에서의 새로운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제 4 조 제 1 항제 1 호중 “1,500제곱미터를 “1천500제곱미터”로 하고, 동항 제 2 호중 “10,000제곱미터”를 “1만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 3 호중 “1,000미터”를 “1천미터”로, “30,000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하고, 동항제 4 호중 “100,000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 5 호중 “1,000,000제곱미터”를 “100만제곱미터”로 하고, 동항제 6 호 및 제 7 호중 “1,000,000제곱미터”를 각각 “1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 5 조제 1 항중 “건축법 제 2 조제 2 호 및 제 3 호”를 “건축법 제 2 조제 2 호”로 하고, “당해 도시공원면적”을 “당해 도시공원면적(도시자연공원인 경우에는 제 6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구역의 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 6 조제 1 항제 3 호중 “운동시설” 다음에, “교양시설(도

서관에 한한다)”을 추가하고, 동항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양호한 자연조건과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화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 6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유화시설 및 운동시설

나. 식물원을 제외한 교양시설

다. 대중음식점·약국·유드호스텔·수화물예치소·전망대·시계탑·주차장 및 매점

제 6 조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원이용자의 편의와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자연공원안에서 그 공원면적의 2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일정한 구역(이하 “공원시설구역”이라 한다)에 공원시설을 집단화할 수 있다.

제 8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하나의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다

- 음의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어린이공원 : 60페센트이하
나. 균린공원 : 40페센트이하
다. 도시자연공원 : 20페센트이하
라. 묘지공원 : 20페센트이상

2. 공원시설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제 6 조 제 1 항 제 5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 면적의 합계는 당해 공원시설구역 면적의 40페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 8 조제 2 항제 1 호중 “100,000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하고, 동호중 “(묘지공원인 경우에는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를 삭제하며, 동항제 2 호중 “100,000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하고, 동항제 3 호중 “1,000,000제곱미터”를 “100만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양시설중 도서관 : 3 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제 3 조제 6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양시설중 도서관의 설치는 당해시설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의 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7 층까지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안의 공원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제 6 조제 1 항제 5 호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묘지 공원안의 공원시설부지면적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규칙 (개정 82. 4. 17)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 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4 조제 1 항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축목의 벌채·재식, 토지의 분할등 행위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기하게 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2. “축목”이라 함은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을 말한다.

제 3 조 (신청서) ①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축목의 벌채·재식을 위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하고, 토지의 분할을 위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다.

②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위한 허가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목적
3. 신청내용
4.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조 (행위허가등) ①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당해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조경·재해 예방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와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지형조건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의 시행이 심히 부적합한 지역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4. 국방상 또는 공공복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5.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동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용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지역에 도로·상수도등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인접지역의 기존도시계획과 조화되도록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임업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 2백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 5 조 (조 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

일 수 있다.

제 6 조 (원상회복의 이행을 위한 조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토지등의 원상회복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준공검사)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죽목의 벌채·재식을 위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준공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 자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3 호 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허가의 규모) ①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용건축물의 전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 만제곱미터 미만

2. 공장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 만제곱미터 미만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 및 녹지역안에서는 건축법이 허용하는 건축을 위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되, 새로 운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1 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안에서 가장 또는 군수가 따로 기준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 9 조 (대지의 안전등)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일 경우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폐불임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경사로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등에 대비하여 맷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0조 (도로)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도로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이외의 모든 도로의 지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정건축물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 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6. 제 1 호 내지 제 5 호 이외에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로구조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급수시설)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급수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등의 용도 및 규모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열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열지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 1 호 내지 제 3 호 이외에 수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배수시설)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하수도등 배수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 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밖의 하수도·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밖의 조건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방식에 의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등의 하중 및 지진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7.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200미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8. 배수관의 끝이는 1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9. 하수처리 시설의 처리능력은 1 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 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한다.
10. 제 1 호 내지 제 9 호 이외에 하수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토석의 채취)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둘째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소음·진동등에 의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한다.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환경보전조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채취허가에 있어서 사업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진동등에 의한 환경조건의 악화가 예상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녹지의 조성 기타 완충지대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공유수면의 매립) 시장 또는 군수는 공유수면의 매립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는 그 매립 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제16조 (죽목의 벌채 등) ①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허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에 수반되는 경우
 2. 수종갱신을 위한 경우
 3. 죽목의 간벌을 하는 경우
 4.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
-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주택지·도로·파수원 기타 이에 유사한 지역에 있는 죽목의 벌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창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설건축물(법 제 14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한한다)의 건축이나 당해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은 예외로 한다.

②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으로서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고, 동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죽목의 벌채·재식의 허가는 동 전축물등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의 허가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죽목의 벌채·재식을 위한 허가기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등)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에 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위해의 발생이나 도시경관의 훼손등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제19조 (토지의 분할)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분할 후 합필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2. 사설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3.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 및 공용지로 되는 경우
4.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5. 녹지지역안에서 기존의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6.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적고시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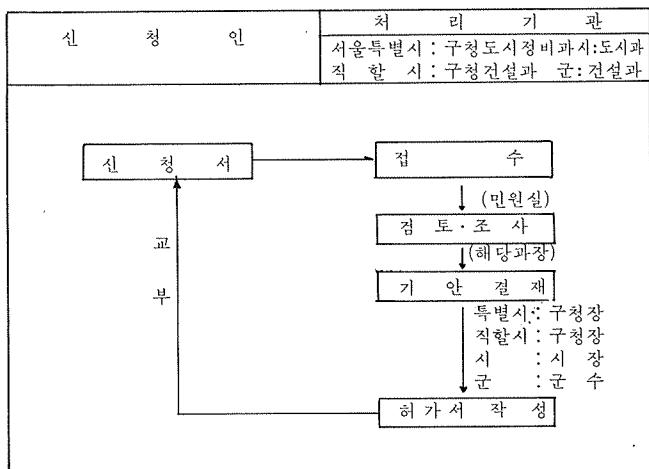
②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 할후 남는 토지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될된 후의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거나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할하기 전의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세부시행기준)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별지 제 1호서식]

<input type="checkbox"/> 토지형질변경 <input type="checkbox"/> 토석채취 <input type="checkbox"/> 죽목벌채 <input type="checkbox"/> 죽목재식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1) 성명	한글		(2) 주민등록번호
		한자		
토지현황	(3) 주소			
	(4) 경사도	도	(5) 토질	
임상현황	(6) 토석매장량	m^3		
	(7) 주요수종			
(8) 임목지	m^2	(9) 무임목지	m^2	
신청내용				
(10) 위 치(지번)				
(11) 토지형질변경면적				
토석채취	(12) 면적	m^2	(13) 수량	m^3
죽목벌채	(14) 수종		(15) 분수	본
죽목재식	(16) 수종		(17) 분수	본
(18) 허가목적				
사업기간	(19) 착공	년 월 일	(20) 준공	년 월 일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신장 군수	기하 부	처리기간	년 월 일
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도시계획승인서 1부 3. 사업계획설계도서(예정건축물등의 용도·규모를 포함한다) 1부 4. 소유권·사용권등 당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증명서류 1부				
2805-6B 190mm×268mm 82. 1.27승인 (신문용지 54g/m 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주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재식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는 허가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정한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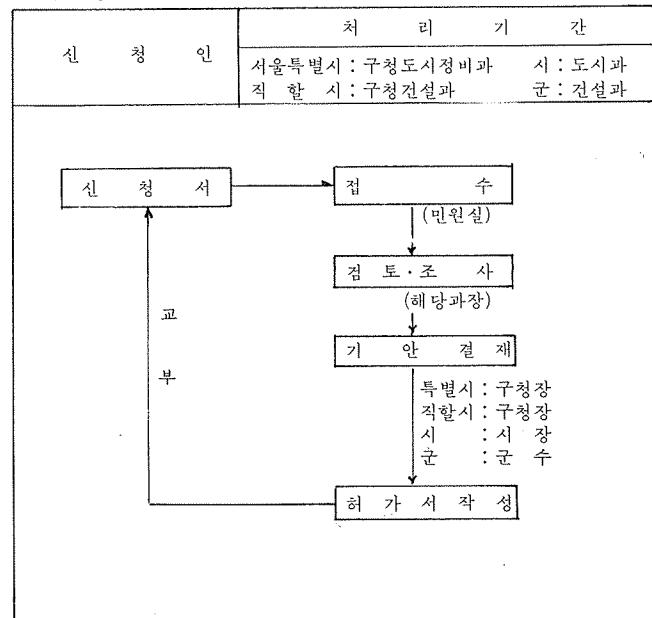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이미 받은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은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등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 2호서식]

토지분할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1) 성명	한글	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신청내용					
(4) 택지소유지					
기본토지	(5) 면적	m^2	(6) 지역	지역	
분할토지	(7) 면적			m^2	
(8) 분할사유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신장 군수	기하 부	처리기간	년 월 일	
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토지합병신청서 1부 3. 토지지목변환신고서 1부 4. 지적도상 분활예정도 1부					
수수료					
없음					
2805-7B 190mm×268mm 82. 1.27승인 (신문용지 54g/m 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주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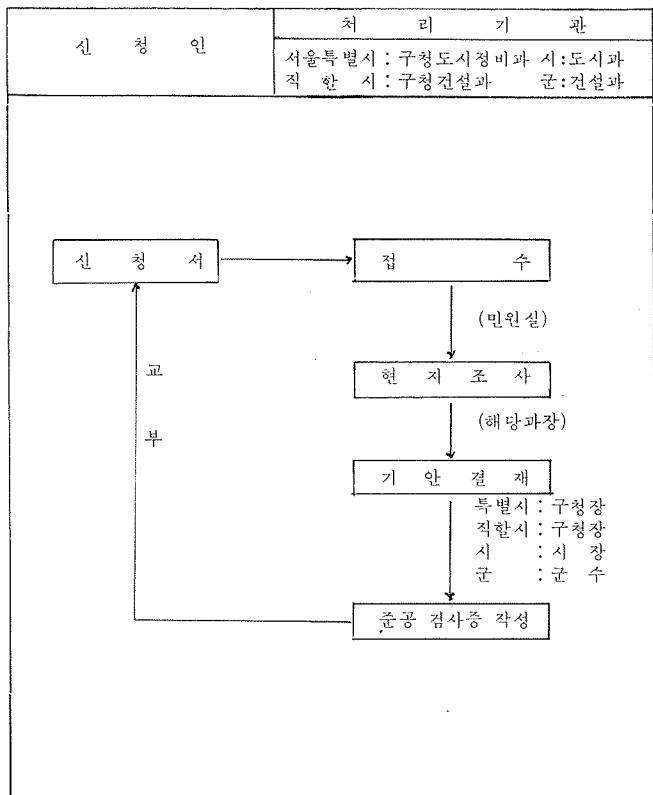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정면적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을 한 자에 대하여는 6 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면적 이상으로의 토지의 분할은 허가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 3 호서식]

<input type="checkbox"/> 토지형질변경 <input type="checkbox"/> 토석재취 <input type="checkbox"/> 죽목벌채 <input type="checkbox"/> 죽목재식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위치 ⑤면적	⑥년월일 19 . . .		
⑦사업기간 착공 19 . . .	준공 19 . . .			
신청내용 ⑧준공면적 m ² ⑨준공년월일				
⑩도로 ⑪급수시설 ⑫배수시설 ⑬기타시설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7 조의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시장 귀하 군수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없음 2805-8B 82. 1.27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그러므로 우리들은 직인과 예술가 사이에 오만한 벽을 세우는 계급구분이 없이 직인의 새로운 조합을 만들자! 우리들은 다같이 건축과 조각과, 회화 모두가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감싸여지는 미래의 새로운 건축을 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들어 내자! 그것은 새로운 신앙의 투명한 상징과 같이 몇 백만이나 되는 직인의 손으로 언젠가는 하늘에로 높아져 갈 것이다.

〈발터·그로피우스〉

바이마르 國立 바우하우스의 綱領 1919